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침술행위(한방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일까요?

〈사건의 개요〉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A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허리에 30mm~60mm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IMS 기술을 했습니다.

의사 A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관련 법률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제5조: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을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쟁점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근육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치료법)

→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속할까요?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

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두1871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3285 판결 등 참조

한방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완화, 치료하는 한방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이와 같은 침술행위(IMS 시술)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IMS 시술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가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시술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 하는 법원이야기)